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2/23}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26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4”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로 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항 제1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같은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항 제6호는 삭제하며, 같은항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 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 등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0명 이하”를 “40명 이하”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2제2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호선하되”를 “위원중에서 호선하되”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30명 이하”를 “40명 이하”로 하며, 같은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로 하며, 같은조 제7항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의2의 제목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동 복지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조제2항과 제5항”로 하고, “각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각 협의체”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을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각 협의체에 출석한”을 “회의에 참석한”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예산”을 “인력 및 예산”으로 “원활한”을 “원활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되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

- 1) “ 「사회복지사업법」 ”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로 개정(제1조, 제3조)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개정(제명 및 제1조 ~ 제3조의2)

나. 조례가 확장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 1) 제2조(기능)제1항 각 호 정비
- 2) 제3조(구성)제1항 정비
 - 구성 인원 :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개정
- 3) 제6조(위원의 임기)제1항 내용 추가
 -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4) 제9조(회의 등)제5항 신설
 -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동 단위 협의체 역할 부여 : 제3조의 2제3항 (대상자발굴, 복지자원연계 등)

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정비 :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
- 2) 제3조(구성)제3조제3항 : “호선”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
- 3) 제3조(구성)의 2 :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 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마.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미비조항 신설 : 제7조의 2